

천주교 서울대교구 인준단체 운영지침 개정

[개정 2019.01.02.]

※ 현행의 '단체' 표기는 개정 지침 내 '인준단체'로 일괄 변경함.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>제1조(명칭)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인준 승인을 받은 단체가 교회의 복음적 사명에 참여하여,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, 분야별협의회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발전하며 올바른 운영을 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.</p>	<p>제1조(명칭) 변동 없음.</p>	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본 지침에서 '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복지 등록단체(이하 단체)'라 함은 교구 인준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, 봉사문화단체를 지칭한다. ② '본 회'라 함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지칭한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본 지침에서 '<u>인준단체(이하 단체)</u>'라 함은 '<u>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(사립)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</u>'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영역에서 교구 인준승인을 받은 시설, 단체 등을 지칭한다. [변경 2019.01.02.] ② 변동 없음. ③ '<u>직영 및 수탁단체</u>'이라 함은 본 회 명의로 직접 운영하거나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이나 단체를 지칭한다. [신설 2019.01.02.] ④ '<u>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(www.escvc.or.kr)</u>'이라 함은 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본 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로서 인</p>	<p>[변경] · 인준단체의 근거 명시</p> <p>[신설] · 직영·수탁단체 용어 정의</p> <p>[신설] ·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용어 정의</p>

	<p>준단체가 본 회에 사업 보고, 자원봉사자 연계, 후원금품 배분 등에 활용하는 것을 지칭한다. [신설 2019. 01. 02.]</p>	
	<p>제 3조(적용범위)</p> <p>본 지침은 교구 인준단체로서 소재지가 서울대교구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 적용한다. 그러나 본 회 직영 및 수탁단체의 경우에는 직영수탁단체 관리운영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19. 01. 02.]</p>	<p>[신설]</p> <p>·본 지침 준수 대상의 명확화</p>
	<p>제4조(가톨릭 및 천주교 명칭사용의 제한)</p> <p>서울대교구 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, 단체로서 인준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‘가톨릭’이나 ‘천주교’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[본조신설 2019. 01. 02.]</p>	<p>[신설]</p> <p>·본 지침 준수 대상의 명확화</p>
<p>제3조(운영의 원칙)</p> <p>① 단체는 교회의 복음적 사명에 따라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한다.</p> <p>② 단체의 관리·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체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.</p> <p>③ 단체의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·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</p>	<p>제5조(운영의 원칙)</p> <p>① 인준단체는 교회의 복음적 사명에 따라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한다.</p> <p>② 인준단체의 관리·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체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.</p> <p>③ 인준단체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·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 [변경 2019. 01. 02.]</p>	<p>[변경]</p> <p>· 인준단체의 「사회복지법인·시설 재무회계규칙」엄수 명시</p>
<p>제4조(권리와 의무)</p> <p>① 본 지침의 사항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(사립)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’에 따른다.</p> <p>② 각 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, 소속된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 단, 협의회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③ 단체는 본 회가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등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</p>	<p>제6조 (권리와 의무)</p> <p>① 인준단체는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, 소속된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 단, 협의회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인준단체는 본 회가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등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</p> <p>③ 인준단체는 매년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에 연간활동계획서, 단</p>	<p>[변경]</p> <p>· 조항의 이동(①→⑤항)</p> <p>· 조항의 이동(②→①항)</p> <p>· 단체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구체적 명시</p>

<p>있다.</p> <p>④ 각 단체는 연간활동계획서, 단체현황, 예결산 보고서 제출의 의무가 있다.</p> <p>⑤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의 임면보고 및 주소지, 시설유형 등 기관현황의 변경 및 단체와의 업무협력을 위해 본 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.</p>	<p>체현황, 예결산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.</p> <p>④ <u>인준단체는 단체장, 소재지, 시설유형 등 단체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본 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.</u></p> <p>⑤ <u>본 지침 외 사항은 '전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(사립)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' 제 9조에 따른다.</u></p> <p>[전문변경 2019. 01. 02.]</p>	<p>· 지침 외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 조항의 구체적 명시</p>
<p>제5조(지원)</p> <p>① 본회는 단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전문프로그램 등에 대해 등록단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본회의 기부된 금품에 대해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한 단체에 대해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배분한다. 단, 세부사항은 배분위원회 지침에 따른다.</p> <p>③ 본회는 단체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시설 또는 인명의 피해를 입어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본회는 단체의 행사(개관식, 바자회, 음악회 등)에 축하금을 예산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 (인준단체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본회는 <u>인준단체</u>에서 수행하고 있는 <u>프로그램이나 기능보강사업</u> 등에 대해 <u>지원사업</u>을 통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[변경 2019. 01. 02.]</p> <p>② 본 회에 기부된 <u>후원금품</u>에 대해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한 <u>인준단체</u>에 대해 <u>본 회 배분위원회</u>를 통해서 배분할 수 있다. 단, 그 세부사항은 배분위원회 지침에 따른다.</p> <p>③ 본회는 <u>인준단체</u>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시설물 또는 인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예산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본회는 <u>인준단체</u>의 행사(개관식, 바자회, 음악회 등)에 축하금을 예산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[변경]</p> <p>· 등록단체 지원사업 외 지원 포함</p>
<p>제6조(포상)</p> <p>본회는 복음정신에 따라 이웃사랑 실천에 모범이 되는 단체 및 직원에 대해 격려와 보상의 의미로 포상할 수 있다. 단, 세부사항은 포상 기준에 따른다.</p>	<p>제8조 (포상)</p> <p>본회는 복음정신에 따라 이웃사랑 실천에 모범이 되는 <u>인준단체</u> 또는 직원에 대해 격려와 보상의 의미로 포상할 수 있다. 단, 그 세부사항은 포상 기준에 따른다.</p>	
	<p>제9조 (인준단체의 유효기간)</p> <p><u>인준단체의 유효기간은 만 5년으로 한다.</u> 단, 본회는 단체의 관리감독을 위해서 정기적인 심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교구 인준심사</p>	<p>[신설]</p> <p>· 인준단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인준의 유효기간 및 정</p>

	위원회에 의견을 상정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9. 01. 02.]	기심사 실시 명시
제7조(고충처리) ① 본회는 단체로부터 접수한 고충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상자와 지역주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여 단체가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. ② 고충처리에 관한 신청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	제10조 (고충처리) 본 회는 인준단체와 관련한 고충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며 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고충처리위원회 지침에 따른다. [전문변경 2019. 01. 02.]	[변경] · 본 회 고충처리 절차·근거 및 절차 명시
제8조(지도점검) 본 회는 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 점검 할 수 있다.	제11조 (지도점검) 본 회는 인준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‘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(사립)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’ 제10조에 의거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. [전문변경 2019. 01. 02.]	[변경] · 인준단체 지도점검의 근거 명시
제9조(단체폐지 사유 및 절차) ① 단체폐지 사유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 1.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이 폐지된 경우 2. 주소지가 타 교구 관할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3. 시설·단체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4. 이외 단체 폐지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단체는 폐지 사유가 기록된 증빙서류를 본회 담당에게 폐지신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	제12조 (단체 인준의 취소 사유 및 절차) ① 사유는 다음과 같다. <u>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교구 인준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</u> 1. <u>인준단체의 소재지가 타 교구 관할지역으로 이전된 경우</u> 2. <u>인준단체가 본 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 이후, 단체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</u> 3. <u>인준단체가 자발적으로 인준 취소를 요청한 경우</u> 4. <u>인준단체가 해산한 경우</u> 5. <u>이외 단체 인준 취소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</u> ② 절차는 다음과 같다. 1. <u>인준단체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, 해당 단체의 소재지가 변경된 고</u>	[변경] · 단체의 인준 취소 사유 추가 및 구체적 명시(①항 2호 추가) · 단체 인준 절차의 구체적 명시

	<p>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재지 이전에 대한 공문과 함께 본회로 30일 이내에 보고한다.</p> <p>2. 본 회에서 실시하는 심사 이후 단체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, 교구 인준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.</p> <p>3. 인준단체가 본 회 인준을 취소하고자 요청할 경우, 해당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공문으로 보고한다.</p> <p>4. 인준단체가 해산한 경우, 해당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공문과 구청으로부터 받은 통보 서류 등을 단체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회로 보고한다.</p> <p>③ 위 제2항 1호부터 4호에 대한 절차 이후, 교구에서 상하반기로 진행되는 인준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된 사항을 공문으로 해당 단체에 통보한다. 통보 이후, 인준단체로서 효력이 상실됨을 해당 본당 및 홍보국 등 관련 분야에 공식적으로 고지한다.</p> <p>[전문변경 2019. 01. 02.]</p>	
	<p>제13조 (단체 인준 취소의 효과)</p> <p>① 해당 단체는 인준단체증(등록증) 원본 등을 본 회에 효력 상실을 통보받은 이후, 30일 이내에 제출한다.</p> <p>② 해당 단체에서는 효력 상실이후, ‘가톨릭’ 및 ‘천주교’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③ 인준단체에 감실이 있는 경우, 교구 사무처와 협의하여 감실을 폐쇄한다.</p> <p>④ 인준단체의 재산의 청산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(사립)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’ 제16조에 의거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19. 01. 02.]</p>	

부 칙		
<p>제1조 본 지침은 회장의 승인(2014. 09. 22)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직영 및 수탁시설의 경우 직영수탁시설 관리운영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</p>	<p>제1조 본 지침은 회장의 승인(2014. 09. 22)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본 지침의 전면개정안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(2019.01.02.)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</p>	<p>[개정]</p> <p>·현행 부칙 제2조는 개정 제3조로 조항이동</p>